

www.moel.go.kr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CONTENTS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고령자고용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액 신규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

지원기간 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로
* 다만,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를 기준
-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
(최대 30명)
-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조건

①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5인 미만 가능 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②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등

지원금액 및 기간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청년

지원조건

<기업> ①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5인 미만 가능 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②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③ 주 28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등

<청년>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참여 기업에 취업한 청년

②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시

지원금액 및 기간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원)

<청년>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대 720만원* 지원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 지정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지정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

지원조건

-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 ②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조업 시작
- ③ 조업시작일 현재 고용위기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
- ④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 ⑤ 지역고용계획의 실시 상황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 지급 상황이 적힌 서류를 갖추고 지원금 신청(3개월마다)

지원내용

조업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간 채용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 기업은 1/3)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지원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특례지원금과 중복지원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인센티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기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최대 2개월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만 인정

* 육아휴직 특례지원금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 자녀의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30인미만 140만원, 30인이상 130만원)

* 사업장 피보험자수에 따라 1개월 최대 지급액 차등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업장 피보험자수에 관계 없이 월 최대 120만원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업무분담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

지원금액 제도사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30인미만 60만원, 30인이상 40만원)

* 사업장 피보험자수에 따라 1개월 최대 지급액 차등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사업장 피보험자수에 관계 없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등 사용근로자 1인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은퇴준비, 학업, 임신 육아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기간 근로시간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범위 내

지원금액 ①(장려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②(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업주가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의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미지원

* 지원인원·한도: 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까지 지원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

노사합의로 임금 감소없이 주4.5일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전면도입) 2시간 이상 단축,
(부분도입) 2시간 미만 단축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지원기간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1년

지원금액

기업규모·단축 유형별로
차등 지원

구분	규모별	유형별 도입 지원		신규 채용 추가 지원
		1인당, (1년)	1인당, (1년)	
지원 수준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교대제 개편, ▲비수도권 기업	부분-월 20만원, 전면-월 40만원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60만원(1년)	
	20인 이상 - 50인 미만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교대제 개편, ▲비수도권 기업	부분-월 30만원, 전면-월 50만원 부분-월 40만원, 전면-월 60만원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80만원(1년)	
지원 한도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명		노동시간 단축분에 비례해 한도 설정
	20인 이상 - 50인 미만	단축 대상 근로자 전체 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장려금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사차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상향 2배 지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

-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및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 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기록 장치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자료)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유연근무 활용 등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 및 개선을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투자비용의 80%, 1천만원 한도 지원

▶ 30인 미만 사업장은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자료 투자비용 100%, 연 180만원 한도 지원(최대 2년 360만원)

정규직 전환 지원('26년 신규)

정규직 전환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로 아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 ①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②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지원기간

정규직 전환 이행 후 최대 1년

지원기간

① 월평균임금 20만원 이상 인상사: 60만원,

② 그 외: 40만원

지원기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소수점 버림, 단 5인~10인까지는 최대 3명)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근로자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

* 고용조정 제한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기간 및 이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 수의 10% 이상 고용조정시 2년 범위내
신규 지원제한- '24. 7. 1. 시행)

이 경우 휴업·휴직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후 90일이 경과해야 함

* 단, 일용근로자, 해고예고·권고사직 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대규모기업 근로시간단축률이
50%이상인 경우 2/3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지원한도 1일 68,100원

유급휴업·유급휴직

지원대상 사업주가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지원

* 유급휴업: 1개월간 전체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

* 유급휴직: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대상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휴직수당을 지급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대규모기업 근로시간단축률이
50%이상인 경우 2/3

지원기간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 180일

지원한도 1일 68,100원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지원대상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대상 근로자에게 지원**

- * **무급휴업**: 전체 피보험자수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 대상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무급 내지 낮은 수당)
- * **무급휴직**: 전체 피보험자수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 대상 30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전 근로자대표 합의* 및 시작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이상 실시 요건 충족 필요
* 휴직수당 미지급 등 무급휴직계획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수준은 필요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원금 신청시 사업주 지급금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지원기간 해당 사업장 재직기간 **중 총 180일**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일 68,100원



고령자고용지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정년제도를 운영(1년 이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중견·사회적기업 사업주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가 30% 초과하는 기업 제외

-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② 정년을 폐지
-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하는 자를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지원금액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별*로 계속고용 1인당 수도권분기 90만원, 비수도권분기 120만원
* 해당 사업장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 지원 제외

지원기간 최대 3년, 분기 단위

지원한도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최대 30명 한도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고용센터	대표번호
서울	02-2004-7333, 7910~11, 7373, 7908, 7379
서울서초	02-580-4956, 4940, 4972, 4974~6, 4978~9, 4989
서울강남	02-3468-4680, 4708~9, 4712~3, 4715, 4723, 4726, 4733, 4736, 4752, 4774, 4784, 4815, 4851, 4861
서울동부	02-2142-8410, 8433, 8455, 8896, 8405, 8432
서울서부	02-2077- 3403, 3473, 6003-5, 6014, 6023, 6047
서울남부	02-2639-2158, 2162, 2187~89, 2499, 2435
서울북부	02-2171-1800, 1805, 1844, 1863, 1776, 1845, 1868
서울관악	02-2171-1800, 1805, 1844, 1863, 1776, 1845, 1868
인천	032-460-4545
인천북부	032-540-5641
인천서부	032-540-2050~4
부천	032-320-8972~8975, 8927, 032-310-8843, 8852, 8854
김포	031-999-0939, 0944
춘천	033-250-1923~4
강릉	033-610-1990~3
속초	033-630-1909
원주	033-769-0942~3
태백	033-550-8603, 8645
삼척	033-570-1906
영월	033-371-6257, 6261
수원	031-231-7864

고용센터	대표번호
의정부	031-828-0810, 0832~4, 0838, 0973, 0976, 031-828-0893, 0975
고양	031-920-3976, 3988, 3997~8, 031-920-3963~4, 3967, 3981, 3990, 031-920-3928, 3960
성남	031-739-3177
안양	031-463-0762~4, 076~8, 3801, 3805, 3827
안산	031-412-6940~6947
평택	031-646-1205
부산	051-860-2070, 1931, 2047, 1979, 2083
부산동부	051-760-7100, 7219
부산북부	051-330-9991, 9826, 9945, 9986, 9955, 9970
창원	055-239-0960
울산	052-228-1921, 1923~1926, 1942
김해	055-330-6434~5, 6440, 6444
양산	055-379-2430, 2422, 2431
진주	055-760-6752~6756
통영	055-650-1811~4, 1818
대구	053-667-6006
대구서부	053-605-6450, 6462~4, 6466, 6488
대구달성	053-605-9518~9, 9543, 9596
칠곡	054-970-1906
포항	054-280-3050, 3051, 3052
경주	054-778-2516, 2532
구미	054-440-3360~4
영주	054-639-1132
문경	054-559-8231

고용센터	대표번호
안동	054-851-8062~3
광주	062-609-8500
광주광산	062-960-3201~2, 3204, 3208
전주	063-270-9210
남원	063-630-3915
정읍	063-530-7501
익산	063-840-6523~4, 6507, 6551, 6553
김제	063-540-8404, 8405
군산	063-450-0634, 0636~7, 0639, 0683, 0655,
부안	063-580-0515
순천	061-720-9161
여수	061-650-0155
광양	061-798-1921
목포	061-280-0541~2, 0552
해남	061-530-2905, 2913
대전	042-480-6016
공주	041-851-8507
논산	041-731-8661
세종	044-861-8992~3
청주	043-230-6700
천안	041-620-7400
충주	043-850-4030, 4032, 4035, 4037
제천	043-640-9322~9323
보령	041-930-6255, 6259, 6243
서산	041-661-5664, 5614
제주	064-710-4462
서귀포	064-710-4595